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의안 번호	424
----------	-----

제출연월일 : 2001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하여
- 대상사업의 범위,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시행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상사업 및 대상규모
  - 대 상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같음(6개사업 24종)
  - 규 모 : 대상사업으로 15만㎡~30만㎡미만
- 심의방법 및 심의결정내용
  - 심의결정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동의·보완·반려)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7인 이상 15인 이하(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 운영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 연 2회 이상 협의내용 점검 실시,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조 례 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사전승인신청결과 : 제외대상임(준칙안 시달)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영향평가”라 함은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재해를 유발하는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의 범위) ①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
2. 산업입지 및 단지개발
3. 관광단지
4. 체육시설
5. 산지개발
6. 우수지매립

②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2장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의 작성 및 협의

제4조(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의 작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토서는 별표 2의 검토서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검토서 작성대행) ①사업자는 검토서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검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수자원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검토서의 제출)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검토서를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검토서의 협의) ①승인기관의 장은 제출된 검토서에 대하여 도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도는 제출된 검토서에 대하여 제8조의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본요건 검토) ①도는 제출된 검토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검토한다.

1. 대상사업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의 적정성
2. 작성대행자 자격요건의 적정성
3. 검토서 검토항목의 누락여부 등

②검토서의 기본요건을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협의내용 결정 및 통보) ①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동의 :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적절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는 경우. 다만, 경미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수정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2. 보완 : 검토서가 부적절하거나 재해저감을 위하여 제시된 방안등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3. 반려 : 당해사업의 규모, 사업의 내용, 시행시기, 위치등에 있어 재해영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재해저감을 위하여 검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작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이의신청과 재협의) ①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승인기관의 장 등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협의 요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의내용 및 사유
2.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검토서

제11조(사업계획변경과 재협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재협의 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사업계획면적이 협의결과 통보시의 사업계획면적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수차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 협의결과 통보시의 사업계획면적보다 100분의 30이상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협의결과 통보시에 결정된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면적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규정에 의거 평가대상규모에 달할 때는 그 사업전체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2조(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수자원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서의 적정성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된 위원은 별지 2호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 개최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들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제16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사업자가 변경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업자는 별지 3호서식의 협의내용 이행관리 대장을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④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 별지 5호서식에 의거 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도지사는 제9조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대해 연 2회이상 점검하고 별지 4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한다.

②도지사는 협의내용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

개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별지 6호서식에 의거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이미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 3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1]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sup>m</sup>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2)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sup>m</sup> 이상인 것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고시전
	(3)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5만 <sup>m</sup> 이상인 것 나. 유수지로서 5만 <sup>m</sup> 이상인 것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4)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sup>m</sup> 이상인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전
	(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sup>m</sup> 이상인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sup>m</sup> 이상인 것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sup>m</sup> 이상인 것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전
	(8)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5만 <sup>m</sup> 이상인 것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9)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5만 <sup>m</sup> 이상인 것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학교설립인가전(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나.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sup>2</sup> 이상인 것</p> <p>(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sup>2</sup> 이상인 것</p> <p>(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15만<sup>2</sup> 이상인 것</p> <p>(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sup>2</sup> 이상인 것. 다만 (1) 내지 (3)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p> <p>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p> <p>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전</p> <p>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전</p>
다. 관광 단지의 개발	<p>(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sup>2</sup> 이상인 것</p> <p>(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sup>2</sup> 이상인 것</p> <p>(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sup>2</sup> 이상인 것</p> <p>(4)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로서 부지면적이 15만<sup>2</sup> 이상인 것</p> <p>(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중 조성면적이 15만<sup>2</sup> 이상인 것</p>	<p>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전(관광숙박업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전</p> <p>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p> <p>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전</p> <p>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라. 산지의 개발	<p>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p> <p>(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15만<sup>2</sup>m 이상인 것</p> <p>(2)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형질변경면적이 15만<sup>2</sup>m 이상인 것</p>	<p>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p> <p>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의 확정전)</p> <p>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p>
마. 특정 지역의 개발	<p>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의 사업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p>	<p>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전</p>
바. 체육 시설의 설치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중 총용지면적이 15만<sup>2</sup>m 이상인 것.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9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p>

비고 :

1.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후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대상 규모에 달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바다에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이를 제외한다.

## [별표 2]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작성요령

항목	세부항목	작성요령
1. 사업의 개요	① 사업명	○ 대상사업의 명칭
	② 소재지	○ 대상사업지의 주소를 기입한다. ※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대상사업의 위치 및 수립된 저감대책 등을 표시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첨부.
	③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관(업체) 및 기관(업체)장의 성명을 기입.
	④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월 단위까지 기입한다.
	⑤ 사업면적	○ 대상사업의 면적을 m <sup>2</sup> 단위와 평단위로 기입.
	⑥ 소요예산	○ 대상사업의 총 소요예산을 기입.
2. 유역현황	① 재해위험지구여부	○ 대상사업지 내에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여부를 조사. ○ 사업지구내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로 표시한다. ○ 사업지구내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로 표시한다.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별첨으로 제시. - 개발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 및 대안을 별도로 제시.
	② 소하천복개여부	○ 개발사업계획중 대상사업지 내 소하천(또는 하천)의 복개여부를 조사. ○ 사업계획중 소하천의 복개계획 및 유로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무'로 표시한다. ○ 사업계획중 소하천의 복개계획 및 유로변경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유'로 표시한다. - 소하천의 복개계획 및 유로변경계획을 별첨으로 제시.
	③ 방재시설현황	○ 사업지구내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정의된 방재시설을 조사하고 개소수를 기입한다. ○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정, 변경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물의 제원 및 현황을 도표로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시한다. ※ 방재시설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별첨으로 제시한다.
	④ 재해발생현황	○ 대상사업지역내 또는 대상사업을 포함한 유역내에 최근 5년간 발생한 홍수중 일최대 및 시간최대 강우량과 강우발생 일시 및 시간, 최대 홍수피해 현황을 기입. ※ 최근 5년간 피해현황을 표로 제시.
	⑤ 분석대상 유역 총면적	○ 대상지역은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 ○ 단,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유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개발로 인한 유출증가량, 사업대상지구를 포함한 분석대상유역면적, 분석대상유역이 합류하는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타 유역으로의 유역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유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항목	세부항목	작성요령
2. 유역현황 (계속)	⑥ 소유역 분할 갯수	○ 개발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 증가 등 수해요인 분석을 위해 분할하는 소유역의 갯수를 기입한다. ※ 소유역 분할도 및 홍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의 분석지점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이때, 개발전·중·후의 소유역의 면적 등이 변화하는 경우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시.
	⑦ 유역면적	○ 소유역별 개발전의 유역면적을 기입한다 ※ 사업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도표로 표시
	⑧ 유역평균경사	○ 소유역별 유역평균경사는 %로 표시.
	⑨ 유역길이	○ 소유역별 유역길이는 ⑩, ⑪의 도달시간과 관련된 길이를 표시한다. ○ 도달시간 산정공식에서 사용되는 유역길이는 도달시간과 관련하여 유역 최강하천의 길이, 유로 최원점으로 부터의 하천유입부분까지의 직선거리, 분류 유로 길이, 최장흐름경로 등이 있으며, 도달시간 산정에 사용된 유역 또는 유로길이를 기입.
	⑩ 도달시간	○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정도의 도달시간공식을 선정하여 도달시간을 산정하고, 공학적 판단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를 기입.
	⑪ 도달시간 산정공식	○ 도달시간 산정에 사용된 공식을 기입.
3. 확률강우량	① 관측소명	○ 사업지구에 가장 인접한 관측소 (설계강우량 산정을 위해 선정된 강우강도식의 유도시 사용된 관측소)명을 기재한다.
	② 강우강도식	○ 가장 최근에 개발된 50년빈도 강우강도식을 기재.
	③ 출처	○ 분석에 사용된 강우강도식을 인용한 문헌 또는 강우강도식 개발 기관(인명)을 기입.
	④ 확률강우량	○ 50년빈도 강우강도식을 이용하여 지속시간 10, 30, 60, 120, 360, 720, 1440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기재.
4. 설계강우의 시간적 분포	① 분포방법	○ 강우의 시간적 분포시 적용한 모형을 기입(Huff의 사분위법, Yen-Chow법, 순간강우강도법 등) ○ 강우의 시간적 분포는 Yen-Chow의 삼각형분포 방법을 원칙으로 함.
	② 분위	○ 설계강우량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 분위를 기재. (Huff : 1~4분위, Yen-Chow : 전, 중, 후, 등) ○ 적용분위는 후방위 적용을 원칙으로 함.
	③ 강우지속시간	○ 강우의 지속시간은 각 소유역의 도달시간으로 함.
	④ 시간분포 우량	○ 해당 지속시간에 대해 시간분포된 강우량을 기록.

항목	세부항목	작성요령
5. 유효강우량	A. 개발전 ① CN값	○ 해당 소유역의 CN값을 기록. 이때 AMC-III조건을 적용. ※ CN값 산정근거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시.
	② 유효강우량	○ 미국 자연자원보호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의 유출곡선지수(curve number)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 ○ 소유역별로 시간별 유효강우량을 산정하여 기록.
	B. 개발중	○ 개발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C. 개발후	○ 개발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6. 홍수유출량		○ 개발전, 중, 후의 홍수 유출량 산정은 SCS 합성단위도법을 사용하여 산정.
	A. 개발전 ① 침투시간	○ SCS방법에 의한 유출분석결과, 해당 소유역의 침투도달시간을 기록.
	② 침투유출량	○ SCS방법에 의한 유출분석결과, 해당 소유역의 침투유출량을 기록.
	③ 유출총량	○ SCS방법에 의한 유출분석결과, 해당 소유역의 유출총량을 기록.
	B. 개발중 ① 침투시간	○ 개발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② 침투유출량	○ 개발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③ 증감량	○ 증감량은 개발중 침투유출량에서 개발전 침투유출량을 제한 양으로 증가한 경우 그 값을 기록하고, 감소한 경우는 감소량 앞에 '기호로 표시.
	C. 개발후 ① 침투시간	○ 개발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② 침투유출량	○ 개발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③ 증감량	○ 증감량은 개발후 침투유출량에서 개발전 침투유출량을 제한 양으로 증가한 경우 그 값을 기록하고, 감소한 경우는 감소량 앞에 '기호로 표시한다. ※ 소유역별 홍수유출분석결과에 대한 그림을 별첨으로 제시한다. 이때 개발상태별 유출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개발전·중·후의 유출수문곡선을 동시에 나타내도록 함.	
7. 토사유출량		○ 토사유출량 산정은 USLE방법 또는 RUSLE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아래의 각 항목은 USLE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RULSE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국립방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II)"의 부록에 제시된 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① 면적	○ 개발상태별 소유역별 면적을 기록. 단위는 ha
	② R(강우침식인자)	○ 건설교통부(1992)에서 제시한 연평균 R값 자료를 이용.

항목	세부항목	작성요령
7. 토사유출량 (계속)	③ K(토양침식인자)	○ 한국수자원학회(1998)에서 제시한 토양동별 K값을 이용.
	④ LS (무차원 지형인자)	○ Foster등(1973)/Wischmeier와 Smith(1978)등이 제안한 LS인자 산정공식을 이용하여 산정.
	⑤ C(피복권리인자)	○ Hann(1994)가 제시한 도표를 이용하여 산정.
	⑥ P (토양보존대책인자)	○ Wischmeier와 Smith(1978)등이 제안한 도표를 이용하여 산정.
	⑦ A(단위면적당 토사유출량)	○ ②~⑥까지의 각 계수를 곱하여 단위면적당 토사유출량을 산정.
	⑧ 토사유출량	○ 단위면적당 토사유출량에 소유역의 면적을 곱하여 소유역별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기록.
	⑨ 계/증감량	○ 개발상태별 전체유역의 토사유출량의 합계를 산정하고 개발전에 비해 증감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상단에는 계를 하단에는 증감량을 기록.
8. 저감대책	A. 저감시설의 설계용량	○ 저감방안은 반드시 사업지구 내에 한하여 수립하도록 함 ※ 저감시설을 포함한 배수계통도를 개발전·중·후로 구분하여 작성·제시
	① 시설종류	○ 침사지, 침사지 겸 저류지, 저류지 등으로 구분
	② 퇴사용량	○ 계획된 침사지 내로 유입하여 침전·퇴적하는 퇴사량은 상류유역에서의 토양손실량, 유역과 침사지 간의 유사전달률, 침사지 내에서의 유사포착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를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퇴사용량을 산정. ○ 유사전달률은 TRB(1980)의 토성에 따른 유역면적과 유사전달율 상관관계도를 이용하여 산정. ○ 퇴적토의 단위중량은 Lane과 Keolzer가 제시한 경험식을 적용. ○ 포착대상 퇴적토사의 최소입경은 0.25mm로 함. ※ 저감시설별 퇴사용량의 산정근거를 표로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시.
	③ 여유용량	○ 여유용량은 유효수심에 모래퇴적깊이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
	④ 평시용량	○ 평상시 저류지내 유지되는 수심에 해당하는 용량을 산정.
	⑤ 조절용량	○ 호우발생시 저류지에 의한 홍수조절이 가능한 용량을 산정. ※ 저류지 홍수추적 결과 등 조절용량 산정근거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
	⑥ 필요용량	○ 퇴사용량, 침전부 여유용량, 평시용량과 홍수조절용량을 합한 용량(②+③+④)을 산정.
	⑦ 시설용량	○ 필요용량에 여유용량을 더하여 산정.
	⑧ 비고	○ 사업완료후에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감시설인 경우 "영구시설", 사업중 재해저감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은 "임시시설"로 기재.

항목	세부항목	작성요령
8. 저감대책 (계속)	<b>B. 저감시설의 제원</b>	※ 저감시설의 각종 제원에 대한 그림을 제시
	① 폭	○ 저류지의 바닥 폭을 기록(단위 : m).
	② 길이	○ 저류지의 바닥 길이를 기록(단위 : m).
	③ 바닥면적	○ 저류지의 바닥면적을 기록(단위 : m <sup>2</sup> ).
	④ 사면경사	○ 저류지 제방의 사면경사를 기록(단위 : %).
	⑤ 바닥고	○ 저류지 바닥의 높이를 기록(단위 : EL.m).
	⑥ 제방고	○ 제방의 높이를 기록(단위 : EL.m).
	⑦ 제정폭	○ 제정의 폭을 기록(단위 : m).
	⑧ 퇴사위	○ 퇴적토사의 높이를 기록(단위 : EL.m).
	⑨ 여유고	○ 퇴사부의 여유고를 기록(단위 : m).
	⑩ 종류	○ 주여수로의 종류를 기록한다.(riser, orifice 등)
	⑪ 저면고	○ 주여수로의 바닥면의 높이를 기록(단위 : EL.m).
	⑫ 제원	○ 주여수로 단면의 제원을 기록(단위 : m 또는 $\phi$ ).
	⑬ 방류관경사	○ 방류관의 경사를 기록(단위 : %)한다.
	⑭ 방류관 종류	○ 유출량 산정시 조도계산에 이용된 관의 종류를 기록한다.
	⑮ 저면고	○ 비상여수로 바닥면의 높이를 기록(단위 : EL.m).
	⑯ 폭	○ 비상여수로의 폭을 기록(단위 : m).
	⑰ 높이	○ 비상여수로의 높이를 기록(단위 : EL.m).
⑱ 월류수심	○ 최대월류수심을 기록(단위 : m).	
9. 종합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증가요인 및 저감시설수립계획</li> <li>○ 저감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li> <li>○ 실시설계에 반영계획 및 유지관리 기술 등</li> </ul>	

(별지 제1호 서식)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1/3)

1. 사업의 개요	① 사업명																	
	② 소재지																	
	③ 사업시행자						④ 사업기간	20 . . . ~ 20 . . .										
	⑤ 사업면적	㎡					⑥ 소요예산	백만원										
	① 재해위험지구여부						② 소하천 복개여부											
2. 유역현황	③ 방제시설현황	시설명	소하천 및 하천	도로 및 철도	상하수도	수리시설	사방시설	댐시설	기타									
		개 소																
	④ 재해발생현황 (최근 5년간)	강수량(최근 5년중 최대값)					피해현황(최근 5년중 최대값)											
		일최대 (mm)	발생기간	시간최대 (mm)	발생기간	인명(인)	공공시설 (백만원)	사유시설 (백만원)	기타									
	⑤ 분석대상유역 총면적	㎡					⑥ 소유역 분할개수	개										
	구분	소유역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소유역 1	소유역 2	소유역 3	소유역 4	소유역 5	소유역 1	소유역 2	소유역 3	소유역 4	소유역 5	소유역 1	소유역 2	소유역 3	소유역 4	소유역 5	
	⑦ 유역면적(㎡)																	
	⑧ 유역평균경사																	
	⑨ 유도연장(m)																	
⑩ 도달시간(분)																		
⑪ 도달시간 산정공식																		
3. 확률강우량 (50년빈도)	① 관측소명	② 강우강 도시	③ 출처	지속시간 (분)	10	30	60	120	360	720	1440							
				④ 확률강우량 (mm)														
4.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① 분포방법	② 분위	③ 강우 지속 시간(분)	시 간 (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④ 시간분포우 량(mm)														

		A. 개발전															
		구분	② 유효강우량(mm)														
5. 유효강우량	소유역	① CN 값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소유역 1															
		소유역 2															
		소유역 3															
		소유역 4															
		소유역 5															
		B. 개발중															
		구분	② 유효강우량(mm)														
	소유역	① CN 값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소유역 1																
	소유역 2																
	소유역 3																
	소유역 4																
	소유역 5																
		C. 개발후															
		구분	② 유효강우량(mm)														
	소유역	① CN 값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소유역 1																
	소유역 2																
	소유역 3																
	소유역 4																
	소유역 5																
6. 홍수량출량	구분	A. 개발전			B. 개발중			C. 개발후									
		①첨두시간 (분)	②첨두유출량 (m <sup>3</sup> /s)	③ 유출총량 (m)	①첨두시간 (분)	② 첨두유출량 (m <sup>3</sup> /s)	③ 증감량 (m <sup>3</sup> /s)	①첨두시간 (분)	② 첨두유출량 (m <sup>3</sup> /s)	③증감량 (m <sup>3</sup> /s)							
		소유역 1															
		소유역 2															
		소유역 3															
		소유역 4															
	소유역 5																
7. 토사유출량	단 계	소유역	① 면적(ha)	② R	③ K	④ LS	⑤ C	⑥ P	⑦ A(ton/ha)	⑧ 토사유출량(ton)	⑨ 사/증감량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소유역1															
		소유역2															
		소유역3															
		소유역4															
		소유역5															
		소유역1															
		소유역2															
		소유역3															
		소유역4															
		소유역5															
		소유역1															
		소유역2															
		소유역3															
	소유역4																
	소유역5																

A. 저감시설의 설계용량											
단계	저감시설	①시설종류	토사저감 필요용량(m)		흙수저감 필요용량(m)		⑤필요용량	⑦시설용량	⑧ 비고		
			②퇴사용량	③여유용량	④정사용량	⑥조질용량					
개발중	저감시설1										
	저감시설2										
	저감시설3										
	저감시설4										
	저감시설5										
개발후	저감시설1										
	저감시설2										
	저감시설3										
	저감시설4										
	저감시설5										
B. 저감시설의 제원											
단계	개발중					개발후					
구분	저감시설	저감시설 1	저감시설 2	저감시설 3	저감시설 4	저감시설 5	저감시설 1	저감시설 2	저감시설 3	저감시설 4	저감시설 5
시 유 지	①폭(m)										
	②깊이(m)										
	③바닥면적(m <sup>2</sup> )										
	④사면경사										
	⑤바닥고(EI.m)										
	⑥제방고(EI.m)										
	⑦제방폭(m)										
퇴 사 부	⑧퇴사위(EI.m)										
	⑨여유고(m)										
주 여 수 로	⑩종류										
	⑪저면고(EI.m)										
	⑫제원(m)										
	⑬방류관경사										
미 상 여 수 로	⑭방류관종류										
	⑮저면고(EI.m)										
	⑯폭(m)										
	⑰높이(m)										
	⑱월류수심(m)										
9. 종합결론											
상기와 같이 수해요인의 영향분석 결과 및 대책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작성자 소속						년 월 일 성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대상사업명					
【검 토 의 견】					
페이지	세부항목	검 토 의 견	구 분		
			보완	수정	권고
<p>상기와 같이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                      (인)</p> <p>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 ※ 1. 보완 : 재해저감방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  
 2. 수정 : 재해저감방안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항  
 3. 권고 : 제도발전을 위하여 권고하는 사항

(별지 제3호 서식)

### 협의내용등의 관리대장

####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영향평가 협의기관			영향평가 협의일	
사업착공일			사업준공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직책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분	협의내용	이행계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월일	공정율 (%)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별지 제4호 서식)

## 협의내용 이행실태 조사·확인결과

사업명 : 

## 1. 조사·확인 및 입회자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기간 :                      ~
- 입회자
- 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 감리자 : 상호(기관명)              직급                      성명
  - 사업자 : 상호(기관명)              직급                      성명

## 2. 일반현황

-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
- 공사기간 :                      ~
- 시공자 :
- 사업내용 :
- 사업규모 :
- 사업비 :
- 사업진도 : 총      %(토목    %, 건축    %, 조경    %, 기타    %)
- 사업승인기관 :
- 사업승인일 :
- 재해영향평가협의일 :

## 3. 협의이행내용 추진사항

## ○ 주요협의 이행내용

- 재해저감시설
  - 개발중 :
  - 개발후 :

구 분	주요 협의내용	확인결과 이행사항	미이행 사유

## 4. 종합의견

(별지 제5호서식)

협의내용관리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지정	} 통보서
				<input type="checkbox"/> 변경	
①사업명		②사업자			
③사업장 위치		④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⑤성명		⑥주민등록 번호		
	⑦주소	(전화 :           )			
	⑧소속		⑨직책		
	⑩지정 일자		⑪본인동의 (서명 또는 인)		
	⑫소지 자격증 (명칭·번호)				
<p>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자                           (서명 또는 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6호서식)

충청북도제해영향평가대상사업		<input type="checkbox"/> 착 공	] 통보서
		<input type="checkbox"/> 준 공	
<input type="checkbox"/> 공사중지			
①사 업 명		②사 업 자	
③사 업 장 위 치		④평 가 협 의 일	
⑤시 공 회 사		⑥현 장 책 임 자	
⑦착 공 일 자		⑧준 공 일 자	
공사 중 지	⑨중 지 일 자	⑩공 사 재 개 일	
	⑪사 유		
	⑫공사중지에 따른 영향저감대책		
충청북도제해영향평가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업의 착공 (준공·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關聯法規(部分拔萃)

###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 ① 법제4조제4항에서“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별표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에 50 이상
  2. 별표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미만인 사업 또는 별표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범위